「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 2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다. 위탁 사무 내용: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1) 시 설 명: 구포동생활체육공원

2) 소 재 지: 구미시 옥계2공단로3길 133(구포동 1191)

3) 규 모: 부지면적 28,052㎡, 연면적 1,916㎡(지상 2층)

4) 주요시설: 테니스장 6면(실내 2면, 실외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등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관리동	1층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2층	사무실, 휴게실, 편의시설	
축구장		인조잔디(1면) 규격105×68m	
풋살장		인조잔디(1면) 규격20×40m	
실외테니스장		인조잔디(4면)	
실내테니스장		실내 인조잔디(2면)	
다목적구장		족구장 및 배구장 (1면), 농구장(1면)	

마.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427,093천원(2027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아.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026. 8. 19.)

자.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구미도시공사)

4. 부서의견

가.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성과 편익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미도시공사는 12년간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을 관리·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 2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제4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구포동생활체육공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이 필요하며,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의 성과평가 및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별 이용실적과 수요를 분석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인조잔디 등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